

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

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 목 :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

나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
다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(2017.9.5.현재)

(단위 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제이오**	광주 북구 매곡동 삼익아파트 103동 ***	191004206외 2건	4,983,740	국유재산사용료

5. 공고내용 :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9 로 문의 바랍니다.

2017년 9월 5일

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